[CJCJ – 답변]

* CJ제일제당은 과거 강제노동 등과 연관된 주주와의 거래와 관련해서 기존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주주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당사는 현재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관리체계 실행에 있어서는 중요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기준은 전략적 중요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사의 직접 거래처가 아닌 부분이 있어 해당 내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최대한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직접거래처가 아닌 경우에는 부당하게 거래처의 경영에 간섭하는 것으로 위험이 있어 기존 법률체계 안에서 제한된 내용을 확인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만, 다양한 채널 및 동행 인터뷰 등으로 일정부분 염전의 현실을 파악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 CJ제일제당은 앞으로도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 점검 대상을 지속확대하고 점검체계를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21년 지속가능경영의 원년으로 삼은 이래 이해관계자 대상 인권 리스크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1년 당사 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권실사를 진행하였고, 22년에는 해외사업장 및 원물을 포함한 공급망을 대상으로 인권실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